
- 2020년 하반기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20년 하반기 사업소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계			31건	주의 12 시정 19		18,881,400	
1	◇ (○)	2019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2	◇ (○)	2020	수익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미공개	주의			
3	◇ (○)	2019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4	◇ (○)	2019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53,000	
5	◇ (▣)	2019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6	◇ (▣)	2019	지역개발채권 부족 소화	시정	추징	25,000	
7	▣	2018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3,294,000	
8	▣	2019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9	▣	2019~ 2020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522,000	
10	▣	2019~ 2020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시정	추징	320,000	
11	■	2019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주의			
12	■	2018~ 2020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13	■	2020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14	■	2018~ 2020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8,048,000	
15	■	2019~ 2020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시정	추징	600,000	
16	■	2019~ 2020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1,998,400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17	◎ (◆)	2020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1,917,000	
18	◎ (◆)	2020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19	◎ (◆)	2019~ 2020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449,000	
20	◎ (●)	2020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21	◎ (●)	2019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22	◎ (●)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91,400	
23	◎ (●)	2019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24	◎ (■)	2020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25	◎ (■)	2020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26	◎ (■)	2020	퇴직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시정	징수	14,600	
27	◎ (■)	2019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주의			
28	◎ (□)	2020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29	◎ (□)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74,000	
30	◎ (□)	2020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대가지급 지연 등 부적정	주의			
31	◎ (□)	2019~ 2020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시정	추징	295,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집행내용	인원	내역	금액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2019.11.21	***** 평가회의 개최 만찬	61명	인당 8천원	488,000	행사실비 지원금	업무추진비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301-09)는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보전금(301목) 공통사항에 의하면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보전금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 평가회의 개최’ 48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간담회 성격의 접중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제공의 업무추진비적 경비임에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부적정하게 만찬비용을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미공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 미등록 및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		5건	0		
1	2020.01.03	***** 유지보수 위탁용역	*,***	'20.1.1~12.31	***** (주)
2	2020.01.03	***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0.1.1~12.31	***** *****
3	2020.01.03	****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0.1.1~12.31	***** *****
4	2020.01.06	***** ** 유지보수 용역	**,**	'20.1.1~12.31	(주)*****
5	2020.01.06	**** ****(****) 유지보수 위탁운영	*,***	'20.1.1~12.31	(주)****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²⁾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³⁾ 제121조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 또는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계약대장을 통해 기록·관리되는 계약정보를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발주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계약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3)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전부개정)

그런데, ◆(●)에서는 '2020년 □ 유지보수 위탁용역' 등 5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자료연계가 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시 계약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에 등록하여 계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9.**.**	*** ***** ** 홍보물품 구입	(주)****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운영 홍보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1건 2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53,000원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미정산 금액	정산 불가품목
계	계	2건		0	153	
1	2019.**.**	***** 배수로 정비공사	(합)**	**,***	44	마대자루
2	2019.**.**	** *** ** **** 보수공사	(합)**	**,***	109	마대자루, 빗자루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 34,419천원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볼 수 없는 단순 청소 도구인 빗자루, 마대 구입비용을 환경보전비 사용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153천원의 공사금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과다 정산한 환경관리비 153,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수량	내역	금액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2건			837,220		
1	2019.**.**	***** **	1식	식재료	450,370	사무관리비	재료비
2	2019.**.**	***** **	1식	식재료	386,850	사무관리비	재료비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비, 광고료, 기계·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료비(206-01)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교육운영 재료(식재료)’ 2건 837천원을 집행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재료는 일반수용비가 아님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부족 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부족 소화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주	통계목	대금 청구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2019.**.**	2019 *** ***** ** ***** 행사운영 물품 임차	***** *****	201-03	2,755	40	65	25 (부족소화)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

구액⁴⁾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행사운영 물품 임차**’ 비용 3,030천원(부가세 포함)을 집행하면서 용역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65천원 중 25천원을 부족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294,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과다 계상액	과다계상내역
계 - 2건			0	3,294	
***** **** 공사(전기) [****(주)]	'18.**.**	'18.**.** ~**.**	**,***	208	이윤과다적용 (이윤율 변경)
***** **** 공사(건축) [(주)*****]	'18.**.**	'18.**.** ~**.**	***,***	3,086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공사

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8.**.**.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공사(전기)」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728,546원)를 조정 없이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된 637,425원을 반영하였으며, 설계변경(2018.**.**.) 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12.78%를 적용하여야 하나 13.27%를 적용함으로써 공사금액 208천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2018.**.**.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공사(건축)」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 이윤율이 당초 12.3884% 이내에서 14.9866%로 늘어났으며, 설계변경(2018.**.**.)시 당초 이윤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된 이윤율 14.9866%를 적용하게 되어 3,086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3,294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이윤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집행된 공사금액 3,294,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및 계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9.**.**	***** ** 및 ** 긴급 응급복구공사	(주)****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긴급 응급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1건 2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522,000원

【제목】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부적정 내역
계	계	2건		0		522	
1	2019.**.**	□ *** *** ** 정비공사	(합)*****	**,***	환경 관리비	75	사용증빙 없음
2	2020.**.**	***** 창고 정비공사	***** ***	**,***	고용 산재	447	가입증빙 없음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법에 따른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정비공사' 등 2건 37,815천원의 건설 공사를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로 사용한 비용의 사진대장 및 회계서류, 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522천원의 공사금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과다 정산한 환경관리비 및 고용·산재 보험료 522,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2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현황

연 도	미소화 건수	미소화 금액	비고
2019 ~ 2020년	16건	320천원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

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⁵⁾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6건 24,313천원(부가세 포함)을 집행 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른 채권을 미소화하거나, 시험연구비 등 비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채권을 징구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32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 개발채권 32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결제방법	급식대장
합계		4건	1,653,000		
1	2019.05.03	☐ 4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297,000	신용카드	미작성
2	2019.06.25	☐ 6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520,000		
3	2019.07.31	☐ 7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480,000		
4	2019.10.30	☐ 10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356,0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⁶⁾」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⁷⁾」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는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그밖에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7)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따라서, ■에서는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 제공 시 급식대장을 작성하여 시간외 근무자에게 적법하게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일자별 급식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급식비용 지급은 1개월 미만으로 1건으로 묶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4건 1,653천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대장(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언제 누구에게 급식제공을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급량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 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급식대장을 작성하여 급식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현황

(단위 : 원)

계좌 잔액 (’20.11.04.)	보관금 내역					비고
	내용	세입일자	반환처	금액	미반환 사유	
12,802,880	계			0		
	***** 위탁관리 보증금	’14.09.23	*****	**,***,***	미청구	반환청구 안내
	보증금 이자	’14.09.23	***	*,***,***	미청구	세입처리
	보증금 이자	’14.12.31	***	*,***	미청구	세입처리
	***** ***** 미환불금(5명)	’15.03.27	확인불가	***,***	반환처 확인불가	입금처 확인
	■ 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17.02.21	확인불가	***,***	반환처 확인불가	입금처 확인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75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등은 보관사유 종료 즉시 해당자에게 반환 조치하여 불필요하게 잔액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각종 보관금 등을 보관사유 종료 시 즉시 정리하지 않고 반환처 확인 불가 및 보증금 미청구 등의 사유로 3년에서 6년 이상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2020.11.4. 감사일 현재 계좌 잔액이 12,802천원에 이르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중인 보관금 잔액 12,802천원에 대해 미처리 사유를 확인하여 즉시 반환, 세입조치 등 정리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년	21명	113,598,962	1,418,110	1,289,380	128,730

※ 세부내역 별첨8)

2. 내 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

8) ■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로 추정금액임

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⁹⁾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되, 일용근로자¹⁰⁾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¹¹⁾를 원천징수한다.

같은 법 제47조, 제59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6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4조 및 164조의3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9) 2020년 기준 1,060천원 미만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음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1)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0.06] - (일당 - 150,000원) * 0.06 * 0.55 = (일당 - 150,000원) * 2.7%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21명을 고용하여 매 월분의 인건비 총 113,598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418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없이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 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8,048,000원

【제 목】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 이윤율 과다적용 현황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 2건				1,038	
** ** * ***** ** ** 재해복구공사 [***** (주)]	'19.**.**	'19.**.** ~'20.**.**	***,***	598	이윤과다적용 (이윤율 변경)
***** ** ****복구공사 [(주)**]	'20.**.**	'20.**.** ~**.**	**,**	440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 도	건수	도급액(천원)	미정산 금액	정산 사유
2018 ~ 2020년	15건	251,834	7,010	증빙자료 미제출

※ 세부내역 불임참조

2. 내 용

가. 건설공사 정산변경 시 이윤 과다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 1,253,947원(이윤율 13.31%)을 적용하여 정산변경을 하여야 하나, 퇴직공제부금비 1,101,455원(이윤율 14.00%)을 적용하여 598천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2020.**.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 136,074원, 연금보험료 182,7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987원(이윤율 8.01%)을 적용하여 정산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125,377원, 연금보험료 168,4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이윤율 14.76%)을 적용하여 440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1,038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¹²⁾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공사’ 등 15건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7,010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과다 정산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이윤율 과다 적용 등 8,048,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현황

연 도	미소화 건수	미소화 금액	비고
2019 ~ 2020년	21건	600천원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

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¹³⁾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1건 66,899천원(부가세 포함)을 집행 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른 채권을 미소화하거나, 재료비 등 비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채권을 징구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60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 개발채권 60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998,4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관외출장여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과다청구 내역
계	2건				412,800	349,400	63,400	
1	***** **** 업무처리 법률자문	***	2019.**.**. 13:00~18:00	강릉	52,000	39,000	13,000	식비
2	*** **** 관련 선진지 답사	*** ***	2019.**.**. ~**.**.	성남, 서울 등	360,800	310,400	50,400	동승자 운임

나. 관내출장여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연 도	건수	지급액	정당금액	초과지급금액
2019 ~ 2020년	252건	2,725,000	790,000	1,935,000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¹⁴⁾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¹⁵⁾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 등의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내 여비 지급표¹⁶⁾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¹⁷⁾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14)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15)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6) 2019.12.06.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령으로 운임지급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

17)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1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¹⁹⁾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업무처리 법률자문’ 등 2건의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외출장명령 시간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식비는 감액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2명의 출장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지에 함께 다녀왔음에도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하여 총 63,400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공용차량 사용 등 관내출장여비 초과지급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18) 2019.7.1.부터 적용

19) 회계과-16321(2019.6.26.) 「국내여비 집행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지급 방법을 안내한 바 있음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의 경우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관용차량 및 업무용 임차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사용자는 관내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감액 등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52건 2,725천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출장비 합산액을 1일 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정액보다 1,935천원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1,998,4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917,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과다계상액	과다계상내역
○ ** **** 공사 [(합)***]	'20.**.**	'20.**.** ~**.**	**,**	1,917	신규단가산출 낙찰률 미적용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20.**.**.일 ○과 계약 시공한 『● 공사(통신)』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2020.**.**.)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일위대가 호표21 ~ 호표31, 자재단가 33번 ~ 40번)의 단가 산정은 신규일위대가 및 시장조사가격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적용하여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적용함으로써 1,917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산정 착오로 과다 집행된 공사금액 1,917,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성명	사역기간	사역명	인건비 지급내역				
			지급월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0	86,970	79,070	7,900
***	2020.6.29. ~ 11.30. (5개월)	***** 보조원	7월	*,***,***	26,070	23,700	2,370
			8월	*,***,***	17,980	16,350	1,630
			9월	*,***,***	16,850	15,320	1,530
			10월	*,***,***	26,070	23,700	2,370

2. 내 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²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매월분의 인건비 총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6,970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없이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0) 2020년 기준 1,060천원 미만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음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 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449,000원

【제 목】 건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 이윤 과다적용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 2건				1,185	
*** ** 증축(건축) 공사 [****(주)]	'19.**.**	'19.**.** ~**.**	**,**	1,037	이윤과다적용 안전관리비과다적용
**** ** ** **** ** 통신공사 [(주)****]	'20.**.**	'20.**.** ~**.**	**,**	148	이윤과다적용 (이윤율 변경)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부적정 내역
2019.**.**	*** ** ** 전기인입공사	**(주)	**,**	고용 산재	264	가입증빙서류 미제출

2. 내 용

가. 건설공사 정산변경 시 이윤 과다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증축(건축)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48,904원)를 조정 없이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된 1,718,730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산변경(2019.11.26.)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10.711%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나 11.733%를 적용하여 510천원을 과다 집행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사용불가 항목인 공사안내표지판 및 가설울타리를 적용하여 410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1,037천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2020.**.**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보수 통신공사」에 대하여 정산변경 시 직접재료비 금액을 과다 적용하였고,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 이윤율이 당초 14.402% 이내에서 15.00%로 늘어나는 등 148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총 2건 1,185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전기인입공사' 1건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의 가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264천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거 과다 정산한 보험료와 이윤율 과다 적용 등 1,449,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년	17명	115,668,500	949,310	863,200	86,110

※ 세부내역 별첨²¹⁾

2. 내 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

21) ●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로 추정금액임

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²²⁾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되, 일용근로자²³⁾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²⁴⁾를 원천징수한다.

같은 법 제47조, 제59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6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4조 및 164조의3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22) 2020년 기준 1,060천원 미만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음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시간의 근로성공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4)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0.06] - (일당 - 150,000원) * 0.06 * 0.55 = (일당 - 150,000원) * 2.7%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정비사업’ 등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17명을 고용하여 매월분의 인건비 총 115,668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949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없이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 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9.**.**	**** ** 구입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구입’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2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91,4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수령액	초과수령액	비고
**** ***** 종합평가회 참석	*** ***	2019.**.** ~**.** (1박2일)	전북 장수	442,800	351,400	91,400	동승자 운임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²⁵⁾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²⁶⁾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 등의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내 여비 지급표²⁷⁾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²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²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

25)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26)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7) 2019.12.06.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령으로 운임지급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
 28)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29) 2019.7.1.부터 적용

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³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종합평가회 참석'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2명의 출장자가 동일한 신용카드로 2곳에서 결제한 주유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여 운임을 청구하였음에도 추가 증거서류를 요구하여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동승자 운임을 지급하여 91,400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91,400원을 회수 조치 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회계과-16321(2019.6.26.) 「국내여비 집행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지급 방법을 안내한 바 있음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초계약일	설계변경일 (품의일자)	사업명	최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금액	도급업체
계			2건	0		
공사 (종합)	2018.**.**	2019.**.** (2회변경)	***** 신축공사(건축/토목)	*,***,***	*,***,*** (증 237,736)	(주)****
		2019.**.** (3회변경)			*,***,*** (증 245,029)	
공사 (전문)	2018.**.**	2019.**.** (1회변경)	***** 신축공사(전기)	***,***	***,*** (증 67,862)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

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제1절,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계약심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원가심사 (추정금액)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전문·기타공사 2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따라서,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또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신축공사(건축/토목포함)’ 1건의 종합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2회, 3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

지 않았으며, ‘◎ 신축공사(전기)’ 또한 전문공사 2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심사대상임에도 1회변경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심사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부서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년	43명	465,924,270	5,411,720	4,921,090	490,630

※ 세부내역 별첨³¹⁾

2. 내 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

31) □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로 추정금액임

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³²⁾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되, 일용 근로자³³⁾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³⁴⁾를 원천징수한다.

같은 법 제47조, 제59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6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4조 및 164조의3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32) 2020년 기준 1,060천원 미만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음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시간의 근로성공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34)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0.06] - (일당 - 150,000원) * 0.06 * 0.55 = (일당 - 150,000원) * 2.7%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유지관리 업무’ 등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43명을 고용하여 매월분의 인건비 총 465,924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411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없이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 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20.**.**	2020년 ***** 용역(□ 5개소)	*****	**,**,000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용역’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2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14,600원

【제 목】 퇴직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퇴직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성명	재직기간	퇴직금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01.15	***	2019.1.1.~12.31.	*,***,***	14,600	13,280	1,320

2. 내 용

「소득세법」 제22조, 제128조 및 제146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을 퇴직소득³⁵⁾이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재직기간 1년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금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³⁶⁾ 14,600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미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6)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국세청) 활용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미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4,600원을 징수하여 납부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천징수 및 이행상황신고 등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집행내용	사업금액	사업추진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9.**.**.	*** **** * ** 교체공사	9,438	▣	401-01 (시설비)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에서 수립한 「◆ 운영관리 계획³⁷⁾」에 따르면, ◆ 운영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시설 보수·보강 및 운영물품 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며 소요 예산은 ‘◆’ 세부사업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예산편성 시 구체적 사용목적이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 집행 시 당초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정책사업인 경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교체공사’ 9,438천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인 ■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236(2019.01.14.)

【일련번호 : 2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0년	7명	173,303,100	4,431,790	4,029,220	402,570

※ 세부내역 별첨³⁸⁾

2. 내 용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

38) □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로 추정금액임

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³⁹⁾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매월분의 인건비 총 173,303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431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삼척시에 납부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없이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9) 2020년 기준 1,060천원 미만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음

【처 분 요 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 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4,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고
** ** ** * * * * * ***** 전국워크숍	*** ***	2019.**.**	세종	228,000	154,000	74,000	동승자 운임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⁴⁰⁾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⁴¹⁾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 등의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내 여비 지급표⁴²⁾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⁴³⁾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⁴⁴⁾

40)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41)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2) 2019.12.06.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령으로 운임지급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
 4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44) 2019.7.1.부터 적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⁴⁵⁾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㉔(㉔)에서는 ‘◆ 전국워크숍 참석’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2명의 출장자가 동일 주유소에서 동일 주유기로 1분의 시간차이로 1만원 및 2만원 결제한 주유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여 운임을 청구하였음에도 추가 증거서류를 요구하여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동승자 운임을 지급하여 74,000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74,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회계과-16321(2019.6.26.) 「국내여비 집행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지급 방법을 안내한 바 있음

【일련번호 : 3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대가지급 지연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지급처	부적정 내역
계			2,183,500		
1	2020.03.03.	***** 근무자 급량비 (12월, 1월)	361,000	*****	회계연도 위반 2019년 세출예산
2	2020.06.29.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출(4~5월)	450,500	***외2	대가지급 지연 뭉음지출
3	2020.06.29.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출(2~3월)	512,000	***외1	
4	2020.06.29.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출(1월)	360,000	****외2	
5	2020.09.25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출(6~7월)	500,000	***외2	대가지급 지연 뭉음지출

2.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⁴⁶⁾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⁴⁷⁾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며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세출 회계연도는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47)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카드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 회계연도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외근무자에게 급식 제공 시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하여 지출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 청구 독려조치 등을 취하여 재정부담이 된 특근매식비를 5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9년 12월 ◆ 근무자 급량비를 12월 말에 급식내역을 확인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를 넘겨 2020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고, 2020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건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소 1개월에서 가장 4개월이 지나서야 일괄 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지연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2개월씩 합산해서 지출하는 등 급량비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출 회계연도 기준을 준수하고 매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내역에 대한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9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현황

연 도	미소화 건수	미소화 금액	비고
2019 ~ 2020년	15건	295천원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

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⁴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5건 24,151천원(부가세 포함)을 집행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295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9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